

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6.1.29

2. 주요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제 2 조(정의) ① ~ ③ (내용생략)</p> <p>④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 1 조 제 2 조(정의) ① ~ ③ (내용생략)</p> <p>④ “지문인증” 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한다.</p> <p>⑤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항 신설</p> <p>항 번호 변경</p>
<p>제 3 조 ~ 제 4 조 제 5 조(이용자확인방법) ① (내용생략) 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</p>	<p>제 3 조 ~ 제 4 조 제 5 조(이용자확인방법) ① (좌 동) 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</p>	

**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(구 하나은행) 개정대비표**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										
<p>포함)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용자가 위임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용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~ 3. (내용 생략)</p> <p><b>제 6 조 ~ 제 7 조</b> (내용 생략)</p> <p><b>제 8 조(자금이체 한도)</b> (내용 생략)</p> <p>&lt;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거래이용수단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보안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</td> <td>1 등 급</td> </tr> <tr> <td>자물쇠카드 + 공인인증서</td> <td>2 등 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제 9 조 ~ 제 13 조</b> (내용 생략)</p> <p><b>제 14 조 (비밀번호 및 자물쇠 카드의 관리)</b> ① ~ ④ (내용 생략)</p>	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자물쇠카드 + 공인인증서	2 등 급	<p>포함)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용자가 위임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용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문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지문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지문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1.~ 3. (좌 동)</p> <p><b>제6조 ~ 제7조</b> (좌 동)</p> <p><b>제 8 조(자금이체 한도)</b> (좌 동)</p> <p>&lt;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거래이용수단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보안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OTP 발생기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</td> <td>1 등 급</td> </tr> <tr> <td>자물쇠카드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</td> <td>2 등 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제9조 ~ 제13조</b> (좌 동)</p> <p><b>제 14 조 (비밀번호, 자물쇠카드 및 지문정보의 관리)</b> ① ~ ④ (좌 동) ⑤ 이용자가 지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지문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지문을 사용해야 하며,</p>	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OTP 발생기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	1 등 급	자물쇠카드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	2 등 급	<p>지문인증 관련 문구 추가</p> <p>거래이용수단에 지문인증 추가</p> <p>조 제목 변경</p> <p>항 신설</p>
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												
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												
자물쇠카드 + 공인인증서	2 등 급													
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												
OTP 발생기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	1 등 급													
자물쇠카드 + (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)	2 등 급													

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(구 하나은행)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<b>제15조(서비스의 제한)</b>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내용 생략)</li> <li>2. 본인확인을 위한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자물쇠카드코드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,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,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</li> </ol> <p><b>제 16조 ~ 제 19조</b> (내용 생략)</p>	<p>저장된 지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만약, 저장된 지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지문등록을 해지해야 한다.</p> <p><b>제15조(서비스의 제한)</b>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내용 생략)</li> <li>2. 본인확인을 위한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자물쇠카드코드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,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,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, 지문인증 시 누적하여 연속 5회 일치하지 않을 때</li> </ol> <p><b>제 16조 ~ 제 19조</b> (좌 동)</p>	<p>지문인증 관련 문구 추가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: 적용